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87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덕흠 • 이헌승 • 박정하

고동진 • 김성원 • 김소희

윤영석 • 박상웅 • 김민전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하도록 하면서,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명시된 특정범죄로 처벌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 종사자가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채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5년 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임(안 제35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 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을 말한다) 5년마다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시 설> 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 도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안 문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현 행	개 정 안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을 말한다) 5년마다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의4(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종사자가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채용한 날부터(휴직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의 경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